

보도일자

2013. 3. 29. (금) 조간

2013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I.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IS, 원장 姜柄皓)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400사 대상 의안분석을 수행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 400사* 중 2013년 1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351개 상장사에 대해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12년 12월 개정, CGS 홈페이지 참조)에 따라 의안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함

* KOSPI200 편입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금융회사, 기타 자산규모 순으로 400개사

II. 의안분석 결과 요약

1. 주주총회 일정(유가증권 상장회사 전체 대상 조사)

- 유가증권 상장회사 689개사 중 345개사(50.0%)가 3월22일(금)에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소집공고일은 개최일의 평균 16.9일 전(상법상 기한은 14일전)으로 68.4%가 기한 혹은 그 하루 전에 소집공고를 공시해 촉박한 일정 문제는 상존함

2. 의안 상정 동향

- 2011년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라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및 (사외)이사 책임 감경 허용 조항을 정관변경 안건으로 상정한 회사는 각각 16개사(4.6%), 25개사(7.1%)로 적다고 할 수 없지만, 2012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음

※ 2012년 191개사 대상 조사에서는 각각 71개사(35.7%), 92개사(46.2%)였음

- 이는 작년에 해당 정관 조항 변경이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올해는 많은 상장사가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보다 신중해졌음을 보여줌

- 정관규정 상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는 회사 134개사 중 올해 실제로 이사회 결의로 해당 사항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승인'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기업은 15개사(4.3%)로 매우 적음
 -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이익배당을 승인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 회사가 주주총회에 관련 '승인'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적정배당 문제에 관한 시장의 우려를 많은 회사가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3. 안건별 반대 권고 비율 및 그룹별 비교

- 분석 대상인 351개 회사가 주주총회에 상정한 전체 2,342개 안건 중 394건 (16.8%)에 반대를 권고함
 - 안건별 반대율(개별건수 기준)은 감사위원 선임(33.8%), 감사 선임(30.4%), 이사 선임(19.8%) 순으로 감사위원 반대율이 2012년 조사에 이어서 계속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 포함) 후보의 경우 장기연임,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 등 경영진과의 독립성 저해가 주된 반대 사유이며, 낮은 출석률에 따른 불성실한 이사회 활동도 중요한 반대 사유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회사(115개사)의 사외이사 선임 반대율(33.8%)이 미 설치 회사(236개사)의 반대율(40.1%)보다 낮아 사외이사 선임에서 위원회 구성에 따른 다소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반대율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임원 선임 안건 반대율은 24.8%로 2012년에 이어 비소속 회사(2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 선임 기준·절차 등을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KOSPI200 지수 편입회사(190개사)의 임원 선임 안건 반대율은 27.3%로 2012년의 동 지수 편입회사(191개사)(20.7%)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 지수 미편입 회사(18.5%)보다 높은 수준임이 확인됨

Ⅲ. 시사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의 독립성·적격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별도의 독립적인 추천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별도 선임 등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임원 선임에서 독립성 저해 등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상기 방안 등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우선 적용할 필요
- 의결권 행사 전담부서를 두기 어려운 국내 기관투자자 여건 상 전문적으로 의안을 분석할 **의결권 자문기관 육성** 등을 통해 촉박한 주주총회 일정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촉진할 필요

(붙임) 의안분석 결과 세부 내용 1부. 끝.

※ 담당부서: Proxy Service 부문

담 당 자: 송민경 연구위원 (3775-3711, mksong@cgs.or.kr)

김명서 연구위원 (3775-3710, caecilia@cgs.or.kr)

(붙임) 의안분석 결과 세부 내용

1. 주주총회 일정

□ (현황 1) 유가증권 상장회사 689개사* 중 78.67%가 3월 3주와 4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3월22일(금), 3월29일(금)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가 각각 319개사(46.2%), 128개사(1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유가증권 상장회사 704개사(2013.03.22. 기준) 중 관리종목 등 15개사 제외

< 주주총회 개최 일정 분포 >

구분	2월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계
개최 회사(개)	10	18	119	346	196	689
비율(%)	1.45	2.61	17.27	50.22	28.45	100

□ 특정 주와 일자에 주주총회 개최가 집중되면,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이 불가능해지는 데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위임장을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수많은 회사의 의안분석에 따르는 부담이 급증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짐

□ (현황 2)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평균적으로 개최일의 16.9일 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체의 68.4%가 법상 기한 혹은 그 전날 공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하는 주주의 어려움을 가중함

< 주주총회 개최일과 소집공고일 사이 기간 현황 >

구분(일)	~10	12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공시 회사(개)	8	3	22	449	80	43	22	6	1	9	21	25	689
비율(%)	1.2	0.4	3.2	65.2	11.6	6.2	3.2	0.9	0.1	1.3	3.0	3.6	100

○ 상장회사는 최소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하는데(상법 제542조의 4), 이는 15일전(최소 4일의 휴일 포함)에 해당함

2. 의안 상정 동향 및 주요 이슈

- 2011년 개정상법 시행에 따라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및 (사외)이사 책임 감경 허용 조항을 정관변경 안건으로 상정한 회사는 각각 16개사(4.6%), 25개사(7.1%)로 적다고 할 수 없지만, 2012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음

※ 2012년 191개사 대상 조사에서는 각각 71개사(35.7%), 92개사(46.2%)였음

- 이는 2012년 해당 정관 조항 변경이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많은 상장사들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보다 신중해졌음을 보여줌
-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게 한 회사가 7개사로서 이사회 책임성 저하의 우려 등으로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대 투표를 권고함
- 정관 규정 상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는 회사 134개사 중 올해 실제로 이사회 결의로 해당 사항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승인'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기업은 15개사(4.3%)로 매우 적음
 - 134개사는 모두 2012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이익배당의 이사회 승인 허용 조항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들임
 -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이익배당을 승인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 회사가 주주총회에 해당 승인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적정배당 문제에 관한 시장의 우려나 논란을 피하려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3. 안건별 세부내용

□ (반대 권고 안건) 반대 투표를 권고한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 186건, 감사위원 선임 114건, 정관변경 27건, 감사 선임 24건, 사내이사 선임 17건, 기타 17건, 이사 보수한도 8건, 배당 지급 1건 순으로 주로 **임원 선임**(341건) 안건임

< 안건별 반대 권고 건수 >

	사외이사 선임 ¹⁾	감사위원 선임 ¹⁾	정관 변경	감사 선임 ¹⁾	사내이사 등 선임 ¹⁾	기타 ²⁾	이사 보수한도	재무제표 승인	전체
건수	186	114	27	24	17	17	8	1	394

1)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 임원퇴직금 규정 제·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합병 추진 등

□ (안건별 반대율) 건수 기준 반대율을 계산하면 감사위원 선임(33.8%), 감사 선임 (30.4%), 이사 선임(19.8%), 정관 변경(15.1%), 이사보수 한도(2.3%), 재무제표 승인 (0.3%) 순으로 역시 **임원 선임**(23.6%) 안건에 주로 반대함

< 안건별 반대율 >

(%)

	정관 변경	이사 선임 ¹⁾	감사위원 선임 ¹⁾	감사 선임 ¹⁾	이사 보수한도	기타 ²⁾	재무제표 승인	전체
건수 기준 반대율	15.1	19.8	33.8	30.4	2.3	44.7	0.3	16.8
(회사 수 기준)	15.2	50.0	61.5	37.7	2.3	45.7	0.3	55.0

1)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 총 38건 중 17건의 기타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으며, 임원퇴직금 규정 제·개정이나 합병 추진(주주제안) 안건 등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은 성과 연계 등이 미흡해 반대를 권고

< 임원 선임 안건별 세부 반대율 >

(%)

	사내이사 ¹⁾	사외이사	이사 선임(소계)	임원 전체 ²⁾
건수 기준 반대율	3.2	37.4	19.8	23.6
(회사 수 기준)	6.7	55.8	50.0	55.2

1) 비상임이사 포함

2) 임원은 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모두 포함

3)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 (임원 선임 반대 사유)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의 주요 반대 사유는 장기연임, 회사와 직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전 임직원 등으로 **경영진과 독립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별 반대 건수 >

	장기연임	낮은 출석률	직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회사의 전 임직원	행정적 사법적 제재	과도한 견임	주주권의 침해	감사관련 문제 이력	계
사외이사	85	75	30	11	4	4	2	1	-	212
감사위원	38	44	18	10	5	3	2	3	1	124
감사	13	-	3	3	3	-	1	1	1	25

- 1)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 개별 후보별로 반대 사유가 중복된 경우도 개별 사유로 간주하여 계산함

- ‘낮은 출석률’은 사외이사·감사위원 반대사유 중 각각 2위, 1위를 차지한 항목으로서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 여부를 가늠할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는 점에서 이사회 부실 운영의 우려를 지우기 어려움
- 특히, 낮은 출석률로 반대 권고한 사외이사 후보 75명 중 33명은 장기연임(30명), 회사와의 직간접 이해관계(3명)로도 반대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경영진 등과 독립성이 떨어지는 데다 충실한 직무 수행 여부마저 의심스러운 후보를 회사 측이 추천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4. 그룹별 비교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비교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반대율을 확인하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임원 선임 안전 반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안전수 기준) 위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임원안전을 상정한 184사의 임원 반대율은 24.8%로 비소속 회사 167사의 반대율(22.2%)보다 2.6%p 높음
- 이는 2012년 조사의 23.7%(기업집단 소속 55개사)와 16.8%(기업집단 비소속 136개사)보다 격차는 줄었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임원 반대율이 상승함
-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대적으로 감사위원, 사내이사(비상임이사 포함) 반대율이, 비소속회사는 감사 반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여부와 임원선임 안전별 반대율 >

(%)

	사내이사 (비상임포함)		사외이사		이사 선임 (소계)		감사위원		감사		임원 전체 ¹⁾	
	I ²⁾	II ³⁾	I	II	I	II	I	II	I	II	I	II
건수 기준 반대율	5.3	0.8	35.7	39.8	20.7	18.7	36.1	29.7	21.2	37.0	24.8	22.2
(회사 수 기준)	10.6	1.9	52.9	59.5	49.7	50.4	59.6	66.7	26.9	45.7	53.8	56.8

1) 임원은 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모두 포함

2) I 은 2012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184개 회사임

3) II는 상기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167개 회사임

4)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전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회사(115개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반대율이 33.8%로서, 미설치 회사(236개사)(40.1%)보다 낮아 사외이사 선임에서 다소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그러나 후보 3명당 1명꼴로 반대를 권고해 사외이사 선임 반대율 자체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해당 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함
 - 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여 독립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여부와 사외이사 선임 안건별 반대율 >

(%)

	사외이사 선임 안건 반대율	
	사추위 설치 회사	사추위 비설치 회사
건수 기준 반대율	33.8	40.1
(회사 수 기준)	60.4	52.3

1)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3) KOSPI200지수 편입 회사의 연도별 비교(2012년, 2013년)

- 2013년 KOSPI200지수 편입 회사(190개사)의 이사 선임 반대율은 22.6%, 임원(이사·감사·감사위원) 선임 반대율은 27.3%로서 2012년의 동 지수 편입 회사(191개사)의 16.4%, 20.7%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KOSPI200 지수 편입 회사의 연도별 임원선임 안건 반대율 >

(%)

	사내이사 (비상임포함)		사외이사		이사 선임 (소계)		감사위원		감사		임원 전체 ¹⁾	
	I ²⁾	II ³⁾	I	II	I	II	I	II	I	II	I	II
건수 기준 반대율	4.2	3.2	39.2	32.3	22.6	16.4	39.1	31.1	39.4	48.2	27.3	20.7
(회사 수 기준)	8.3	6.9	60.8	52.7	57.5	44.6	63.4	46.2	54.2	52.2	62.2	50.3

1) 임원은 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모두 포함

2) I 은 2013년 KOSPI200 지수 편입 회사 중 12월 결산법인 190개 회사임. 2012년 같은 지수에 편입한 회사 중 14개사가 제외되었고, 11개사가 새로 편입되었음

3) II 는 2012년 KOSPI200 지수 편입 회사 중 12월 결산법인 191개 회사임

4)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4) KOSPI200지수 편입 여부에 따른 비교

- 2013년 KOSPI200 지수 편입 회사(190개사)의 이사 선임 반대율은 22.6%, 임원(이사·감사·감사위원) 선임 반대율은 27.3%로서 해당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회사(160개사)의 15.9%, 18.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KOSPI200 지수 편입 여부와 임원선임 안건별 반대율 >

(%)

	사내이사 (비상임포함)		사외이사		이사 선임 (소계)		감사위원		감사		임원 전체 ¹⁾	
	I ²⁾	II ³⁾	I	II	I	II	I	II	I	II	I	II
건수 기준 반대율	4.2	2.0	39.2	34.4	22.6	15.9	39.1	25.4	39.4	23.9	27.3	18.5
(회사 수 기준)	8.3	4.7	60.8	48.5	57.5	40.3	63.4	57.1	54.2	27.0	62.2	46.3

1) 임원은 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모두 포함

2) I 은 2013년 KOSPI200 지수 편입 회사 중 12월 결산법인 190개 회사임

3) II 는 351개사 중 2013년 KOSPI200 지수 편입 회사가 아닌 161개 회사임

4)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